

**(가칭)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 
민간위탁 동의안  
심 사 보 고 서**

의안 번호	1181
----------	------

2019년 12월 16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22일
3. 상정일자 :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19년 11월 21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 (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)

### 1. 제안이유

- (가칭)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동 접근성과 안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소 규모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넓고 좋은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, 아이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·활용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하여 초등돌봄질을 견인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임

- 특히 (가칭)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성평등한 돌봄 환경조성을 위해 건립하는 ‘스페이스살림’ 내 설치하는 것으로, 초등학생 눈높이의 프로젝트 기획 운영 및 돌봄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,
- 서울시 ‘온마을 아이돌봄 추진지원단’ 과 긴밀한 업무 연계협력을 통한 종사자 역량강화, 돌봄자원 연계망 구축 등 업무를 체계적,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(가칭)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
- 소재지 : 동작구 대방동 340-4번지 외 3필지
- 규 모 : 스페이스살림 내 594.2㎡(1층 485.3㎡, 2층 110.9㎡)
- 준공일 : 2020. 6.(예정)
- 공간구성(안)

구분		면적(㎡)	용도
지상	2층	110.9	사무공간, 놀이치료·특화 가족지원 등 집중 치유공간
	1층	485.3	프로젝트기반배움 가변형 교실, 다목적 놀이공간, 전문인력교육장 겸용

※ 1층 외부에 키움센터와 이어지는 옥외놀이터(78.33㎡) 공간 별도로 조성예정

나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 :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위탁기간 : 2020. 6월 ~ 2023. 5월(3년간)
- 위탁유형 : 시설위탁
-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조직 및 운영(안) : 3팀, 16명 (센터장 1, 종사자 15)

센터장(1)		
운영총괄		
기획총무팀(6)	돌봄운영팀(6)	돌봄자원연계팀(3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획조정 및 운영 총괄</li> <li>· 조직·인사, 예산·결산·지출, 총무</li> <li>·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</li> <li>· 시설안전관리 및 차량관리·운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콘텐츠 구성 및 운영</li> <li>· 문·예·체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</li> <li>· 돌봄서비스 제공 기획 및 운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</li> <li>· 돌봄자원 연계 및 인적·물적 인프라 구축</li> <li>· 중소규모 키움센터 교육 지원</li> </ul>

※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조성·운영 TF를 통해 적정 인력 및 조직구성, 세부 직무분석안 마련 예정

○ 위탁사무 내용

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·물품 관리
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
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서비스 기획 및 운영

- 권역 내 아이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·물적 연계기반 마련
  -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
  - 온마을아이돌봄추진지원단과 업무 연계·협력 및 지원
  - 권역 내 중소 아이돌봄 시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지원
  -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
  - 제2호 거점형키움센터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
  -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 사업추진 관련 업무 협조
- '20년 소요예산(안) : 1,323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

#### 다. 추진근거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
-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「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」 (시장방침 제33호, 2019.3.6.)
- 「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·운영계획」  
(아이돌봄담당관-5588, 2019.4.29.)
- 「스페이스살림 자문단 회의결과 보고」 (여성정책담당관-7969, '19.5.22.)
- 「2020년 거점형키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」

(아이돌봄담당관 - 10676(2019.8.23.)

- 「2019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절차 안내」 (조직담당관-11925, 2019.9.19.)

## 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권역 내 초등학생 대상 문화·놀이·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·운영, 돌봄서비스 제공,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한 아이돌봄 협력망 구축 및 인적·물적 아이돌봄자원 연계 등 기능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임
- 특히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성평등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대표공간인 스페이스살림 내 설치하는 것으로,
  -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내 운영중인 ‘온마을 아이돌봄 추진지원단’과 긴밀한 업무 연계·협력,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및 교육지원 등 기능을 유연하게 수행하기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한 업무수행이 필요함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○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

**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**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**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**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3.18, 2009.7.30, 2014.5.14>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의 예외적 동시상정

- 서울시 스페이스살림 조성 과정에서 ‘여성 창업 기능’ 과 함께 ‘성평등한 돌봄환경 조성 기능’이 강화됨에 따라, ‘19.5월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’를 스페이스 살림 설계에 반영하기로 하였고, 이후 거점형 센터로서의 면적 확정과 거점형으로서 기능구성, 기본적인 운영 서비스 사항의 정립이 ‘19.8월경 구체화되었음
- 이에 ‘19.8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안건 제출, 심의(‘19.9.6.) 등 절차 진행이 가능하였고, 조직담당관 적정통보(‘19.9.19.)에 따라 부득이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예외적으로 동시상정 하게 되었음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# 1 동의안의 개요

- 동 동의안은 ‘(가칭)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’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1항<sup>1)</sup>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,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.
  
- 시장이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  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·물품 관리
  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
  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서비스 기획 및 운영
  - 권역 내 아이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·물적 연계기반 마련
  -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
  - 온마을아이돌봄추진지원단과 업무 연계·협력 및 지원
  - 권역 내 중소 아이돌봄 시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지원
  -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제2호 거점형키움센터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
  -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 사업추진 관련 업무 협조
- 거점형 키움센터(이하 “거점센터”라 함)는 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) 및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제5호3)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아동 대상 돌봄 시설의 하나로 일반형 및 융합형 키움센터와 연계한 특화 예술 프로그램 제공, 주말·저녁시간 등에 틈새·긴급돌봄 공급 및 지역 내 돌봄 거점으로서, 중·소규모 돌봄기관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.

- 
- 2)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  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  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  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  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 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- 3)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돌봄 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,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
5. 시의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 대상 방과후 돌봄,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프로그램의 제공 등 초등돌봄 사업

### <키움센터 유형별 기능 및 역할>

	(국시비 매칭, 3:7)	(전액 시비투자, 서울形 모델)	
기능 및 역할	<b>일반형 키움센터</b>	<b>융합형 키움센터</b>	<b>거점형 키움센터</b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집·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</li> <li>• 틈새돌봄 수요와 접근성 중시</li> <li>• 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과 연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아동센터와 협업·상생모델</li> <li>• 마을권역별 돌봄거점 역할 수행</li> <li>• 긴급주말돌봄 강화, 급식제공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대표 특화 돌봄 서비스 제공</li> <li>• 문화·예술·체육, 부모교육 강화</li> <li>• 일반형·융합형 단점 보완지원</li> </ul>
면적	66㎡ 이상 (小규모, 구립)	210㎡ 이상 (中규모, 구립)	1,000㎡ 이상 (大규모, 시립)

- 동 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업은 순수 시비 지원으로 거점센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시 설 명	(가칭)제2호 거점형 키움센터
소 재 지	동작구 대방동 340-4번지 외 3필지
규 모	스페이스살림 내 594.2㎡(1층 485.3, 2층 110.9)
준 공 예 정 일	2020. 9.
위 탁 사 무	제2호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전반
위 탁 기 간	2020. 6월 ~ 2023. 5월(3년간)
조 직 운 영 ( 안 )	3팀, 16명 (센터장 1, 종사자 15)
'20년 예산(안)※	1,323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
수 탁 체 선 정	공개모집

###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<sup>4)</sup>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<sup>5)</sup> 및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제1항<sup>6)</sup>에 시장이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하고 있는 바, 방과후 초등돌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

4)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5)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6)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동 거점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,

- 「민간위탁조례」 제4조(제1항제3호)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  - 문화·예술·체육 전문 프로그램 제공 및 부모 상담, 일반형·융합형 센터를 포함한 돌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- 또한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3항(8)에서 돌봄시설을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,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
---

7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**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삭제

8)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# 4 종합 검토 의견

- 금번 시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사무는 초등 방과후 돌봄 시설 중 문화·예술·체육 전문 프로그램 제공 및 부모 상담, 일반형·융합형 센터를 포함한 돌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,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.
- 이에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10명, 전원 찬성】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(가칭)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8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(가칭)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동 접근성과 안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소규모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넓고 좋은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, 아이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·활용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하여 초등돌봄 질을 견인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임
- 나. 특히 (가칭)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성평등한 돌봄 환경조성을 위해 건립하는 ‘스페이스살림’ 내 설치하는 것으로, 초등학생 눈높이의 프로젝트 기획 운영 및 돌봄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,
- 서울시 ‘온마을 아이돌봄 추진지원단’ 과 긴밀한 업무 연계협력을 통한 종사자 역량강화, 돌봄자원 연계망 구축 등 업무를 체계적,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(가칭)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

- 소재지 : 동작구 대방동 340-4번지 외 3필지
- 규모 : 스페이스살림 내 594.2 $m^2$ (1층 485.3 $m^2$ , 2층 110.9 $m^2$ )
- 준공일 : 2020. 6.(예정)
- 공간구성(안)

구분		면적( $m^2$ )	용도
지상	2층	110.9	사무공간, 놀이치료·특화 가족지원 등 집중 치유공간
	1층	485.3	프로젝트기반배움 가변형 교실, 다목적 놀이공간, 전문인력교육장 겸용

※ 1층 외부에 키움센터와 이어지는 옥외놀이터(78.33 $m^2$ ) 공간 별도로 조성예정

## 나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 :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위탁기간 : 2020. 6월 ~ 2023. 5월(3년간)
- 위탁유형 : 시설위탁
-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조직 및 운영(안) : 3팀, 16명 (센터장 1, 종사자 15)

센터장(1)		
운영총괄		
<b>기획총무팀(6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획조정 및 운영 총괄</li> <li>· 조직·인사, 예산·결산·지출, 총무</li> <li>·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</li> <li>· 시설안전관리 및 차량관리·운영</li> </ul>	<b>돌봄운영팀(6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콘텐츠 구성 및 운영</li> <li>· 문·예·체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</li> <li>· 돌봄서비스 제공 기획 및 운영</li> </ul>	<b>돌봄자원연계팀(3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</li> <li>· 돌봄자원 연계 및 인적·물적 인프라 구축</li> <li>· 중소규모 키움센터 교육 지원</li> </ul>

※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조성·운영 TF를 통해 적정 인력 및 조직구성, 세부 직무분석안 마련 예정

## ○ 위탁사무 내용

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
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·물품 관리
  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
  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서비스 기획 및 운영
  - 권역 내 아이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·물적 연계기반 마련
  -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
  - 온마을아이돌봄추진지원단과 업무 연계·협력 및 지원
  - 권역 내 중소 아이돌봄 시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지원
  -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
  - 제2호 거점형키움센터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
  -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 사업추진 관련 업무 협조
- '20년 소요예산(안) : 1,323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

#### 다. 추진근거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
-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「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」 (시장방침 제33호, '19.3.6.)
- 「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·운영계획」 (아이돌봄담당관-5588, '19.4.29.)
- 「스페이스살림 자문단 회의결과 보고」 (여성정책담당관-7969, '19.5.22.)
- 「2020년 거점형키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」  
(아이돌봄담당관 - 10676('19.8.23.))
- 「2019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 
후속절차 안내」 (조직담당관-11925, '19.9.19.)

## 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권역 내 초등학생 대상 문화·놀이·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·운영, 돌봄서비스 제공,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한 아이돌봄 협력망 구축 및 인적·물적 아이돌봄자원 연계 등 기능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임
- 특히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성평등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대표공간인 스페이스살림 내 설치하는 것으로,
  -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내 운영중인 '온마을 아이돌봄 추진지원단'과 긴밀한 업무 연계·협력,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및 교육지원 등 기능을 유연하게 수행하기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한 업무수행이 필요함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#### ○ 아동복지법 제44조의2

**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**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**제7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**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3.18, 2009.7.30, 2014.5.14>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의 예외적 동시상정

○ 서울시 스페이스살림 조성 과정에서 ‘여성 창업 기능’ 과 함께 ‘성평등한 돌봄환경 조성 기능’이 강화됨에 따라, ‘19.5월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’를 스페이스 살림 설계에 반영하기로 하였고, 이후 거점형 센터로서의 면적 확정과 거점형으로서 기능구성, 기본적인 운영 서비스 사항의 정립이 ‘19.8월경 구체화되었음

- 이에 ‘19.8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안건 제출, 심의(‘19.9.6.) 등 절차 진행이 가능하였고, 조직담당관 적정통보(‘19.9.19.)에 따라 부득이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예외적으로 동시상정 하게 되었음

※ 작성자 : 아이돌봄담당관 초등돌봄운영팀 박진영 (☎ 2133-4944)